

제403회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3년2월8일(수)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2)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2)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3)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1)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6)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4)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5)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1)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2)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5)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2)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4)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3)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3)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6)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8)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8)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9)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1)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5)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0)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8)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8)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3)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3)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4)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8)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7)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8)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0)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1)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6)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8)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7)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9)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2)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2)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7)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2)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3)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2)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2)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6)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8)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5)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4)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0)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7)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7)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9)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6)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2)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5)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9)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6)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8)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2)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2)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3)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7)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1)
1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1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1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1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1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1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1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1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1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1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1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1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1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1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1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1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1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1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5)
1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0)
1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3)
1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0)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3)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7)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4)
14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14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1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1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1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1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15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1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1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1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1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1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1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16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
1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1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17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1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
1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1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
1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
17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17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17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
1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6)
17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18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18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
18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5)
18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8)
1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

상정된 안건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9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9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9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9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 9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10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10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10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10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10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10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 10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10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10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10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10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2) 10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10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2) 10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3) 10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1) 10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6) 10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2) 10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4)	10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5)	10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1)	10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2)	10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5)	10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2)	10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4)	10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7)	10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3)	10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3)	10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6)	10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	10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	10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	10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	10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8)	10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	10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8)	10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9)	10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	10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	10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1)	10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5)	10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0)	10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8)	10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8)	10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	10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	11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3)	11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3)	11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4)	11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8)	11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7)	11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	11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8)	11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	11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0)	11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	11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1)	11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6)	11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	11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8)	11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7)	11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	11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9)	11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	11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0)	11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2)	11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2)	11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2)	11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	11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7)	11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2)	11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3)	11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2)	11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2)	11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6)	11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8)	11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5)	11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4)	11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0)	11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	11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7)	11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7)	11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9)	11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6)	11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2)	11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	11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	1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5)	11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9)	11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6)	11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8)	12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2)	12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2)	12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3)	12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7)	12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1)	12
1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12
1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12
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12
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12
1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12
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12
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12
1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12
1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12
1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12

1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12
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12
1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12
1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12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12
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12
1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12
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12
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12
1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12
1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12
1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12
1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12
1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12
1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12
1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12
1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12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12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12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	12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	12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	12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12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5)	12
1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0)	12
1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3)	12
1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0)	12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3)	12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	12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27)	13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15)	13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748)	13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	13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97)	13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474)	13
14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2)	13
14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4)	13
1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4)	13
1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9)	13
1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7)	13
1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4)	13
15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6)	13
1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7)	13
1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4)	13

1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3)	13
1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3)	13
1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26)	13
1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2)	13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3)	13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5)	13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3)	13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31)	13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95)	13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30)	13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1)	13
16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5)	13
1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4)	13
1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2)	13
17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9)	13
1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8)	13
1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2)	13
1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6)	13
1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1)	13
17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1)	13
17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06)	13
17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	13
1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6)	13
17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8)	13
18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84)	13
18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60)	13
18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5)	13
18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8)	13
1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	13

(10시08분 개의)

○소위원장 김교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3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소위가 오늘부터 사흘간 심사할 안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지방세와 관련된 총 184건의 법률안입니다.

회의는 먼저 일몰이 종료됨에 따라 심사가 시급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소위 심사자료 순서에 따라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심사를 거쳐 안전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6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3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160)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21)
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15)

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731)
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7)
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9)
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5)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96)
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604)
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41)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5)
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82)
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44)
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11)
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2)
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58)
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2)
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13)
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01)
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66)
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2)
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694)
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15)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51)
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22)
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5)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92)
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4)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57)
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3)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13)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46)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7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79)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787)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854)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28)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37)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8)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9)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42)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3)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71)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85)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60)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68)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78)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91)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07)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3)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23)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4)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78)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87)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98)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78)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65)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0)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86)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1)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76)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378)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8)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57)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3)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69)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00)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0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82)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22)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752)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2)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27)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42)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63)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082)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102)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06)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48)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265)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74)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390)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21)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37)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57)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479)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526)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2)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11)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47)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865)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19)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26)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78)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7982)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72)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083)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107)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8211)
10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74)
10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48)
1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002)
10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28)
10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626)
10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01)
10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03)
10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28)
11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52)
1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23)
1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16)
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21)
1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88)
1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27)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1)
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2)
1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87)
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74)
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58)
1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6)
1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8)
1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30)
1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96)
1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19)
1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7)
1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38)
1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9)
1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8)
1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0)
13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5)
13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44)
1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01)
13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55)
1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95)
13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0)
13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03)
13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460)
13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43)
14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20)

14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227)
14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715)
14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748)
14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3)
14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097)
14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8474)
14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72)
14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44)
14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004)
15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29)
15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627)
15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594)
15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재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06)
1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27)
1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554)
15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673)
15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973)
15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1426)
1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52)
16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흠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473)
16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0645)
16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003)
16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1331)
16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595)
16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30)
16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4551)
16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255)
168.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5524)
169.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672)
17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759)
17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888)
17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6972)
17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7606)
17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121)
17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3051)
17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5606)
17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6)
17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2786)
179.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0938)
18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2084)
181.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봉민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460)
182.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5)
18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17848)
1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7784)

(10시09분)

○소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84항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8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안부의 한창섭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존경하는 김교홍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월 임시회의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행정안전부 소관 법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 완성도 높은 법안이 성안될 수 있도록 법안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홍**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제5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는 저희가 특례법에 대한 개관을 써놓았는데요.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고 안건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정부 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약표가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76개 특례의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2022년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내용은 96개이며, 총 감면 규모는 1조 1924억 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은 이 중 81개의 일몰기한을 단순 연장하고 있으며, 4개는 일몰 종료, 11개는 일몰기한을 연장하면서 감면을 확대 또는 축소하고 있고, 4개의 특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게 되면 향후 연간 1조 1468억 원의 지방세 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최소납부세제의 의미와 적용 현황입니다.

최소납부세제는 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면제세액의 15%는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면제액이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도록 하여 국민개세주의, 조세형평성 가치를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취약계층과 공익성이 매우 높은 분야는

예외적으로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특례의 원칙을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호에서는 목적의 공익성, 사무와의 연계성 그리고 조세의 형평성, 조세부담능력, 6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8호에서는 목적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의 최소화 등이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례의 원칙 간에는 상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의견이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

현행 등록면허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현황은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으로 가급적 그 감면 특례를 정비하는 것이 정부안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다음, 4-1입니다.

일몰기한 도과 후 법안 의결에 따른 사후처리 방향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를 통해서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지방세 감면의 효력을 소급 적용하도록 수정의견을 내었습니다.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이 환급이 될 예정입니다.

환급가산금의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일의 익일부터 지급결정 시까지 기간에 대해 연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이율을 계산하여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먼저 직접 사용 범위를 명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요건인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한 정의에서 임대는 제외토록 명시하고 직접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개별 조문에서 '임대는 제외' 문구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접 사용에 임대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직접 사용으로 본다면 감면 대상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사업 수행 주체에게 부동산 등을 임대만 하는 부동산 등의 소유자도 감면의 혜택

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직접 사용의 정의에서 임대는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 법 해석의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만 임대사업 자체가 지방세 감면 대상인 목적 사업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사용으로 보아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조문대비표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수석전문위원 보고 내용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첫 번째, 직접 사용 범위 명확화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7쪽,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7페이지입니다.

직접 사용 범위 확대 관련인데요.

개정안은 직접 사용의 범위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면 대상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도 공사 지연을 사유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2년 후 토지를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누리는 방식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추징 배제 사유와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공사 지연 발생 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서 추징이 배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하실 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의원안에 따른 경우에는 편법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9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관련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항목 중 감면 대상을 삭제하여 지방세 감면 대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자체 차원의 지방세 감면 활용률 증가 및 그에 따른 지역별 특화산업 발전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총량한도가 정해져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조례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대상 확대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자경농민, 자영업민에 대한 취득세 지원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후계농·어업인 등의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점인데요. 농·어업을 경영할 의사만 있어도 후계농·어업인에 해당하여 감면대상이 광범위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의원안에 따르면 후계농업인에 대한 개념이 좀 불명확합니다.

또 굉장히 포괄적이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50% 경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득세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개정안은 50%를 60%로 상향하고 후계농업인에 대해서 60%로 또 신규로 지원을 하자는 내용인데 지금 농·어업 현실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 쪽에서 상향하는 데 대한 의향,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계·청년 농어업인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거기의 규정에 따르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범위가 좀 확대되는 그런 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이 근거법에서 지원하는 관련 사항을 선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우택 위원 그러니까 50%에서 6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반대한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지요.

○정우택 위원 그러면 정부 의견대로 하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안대로.

그다음에 27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등 농지 취득 관련입니다.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및 농지확대 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21년도 연간 감면 규모는 약 1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몰기간 연장 관련해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일몰기한의 설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정부 제출안 유지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년으로 하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 관련입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내에서 교환·분합하는 농지 또는 농어촌정비법 및 농어촌공사법에 따라 교환·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1년도 연간 감면 규모는 약 7000만 원입니다.

검토의견 역시 특례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일몰기한 3년 연장인 정부 제출안 유지를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우리 위원님들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1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독립가, 임업후계자가 교환·분합하는 임야 및 보전산지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교환·분합 임야 및 보전산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구체적인 일몰기한 설정은 역시 3년 이내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안호영 의원님은 10년이네.

자,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3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0t 미만의 소형어선 관련된 내용입니다.

20t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일몰기한 연장은 역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이 정해져 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일몰기한 3년 연장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5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양식어업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 연장 및 등록면허세 면제를 종료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이 정해져 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등록면허세 면제 종료는, 정부안의 경우 지금 취득세 면제는 현행과 같이 유지하면서 등록면허세 면제는 종료하고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으로 가급적 그 감면 특례를 정비하는 추세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소규모 어민 지원을 위해 감면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세목인 등록면허세 감면은 이번에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 그런데 지금 정부가 등록면허세가 수수료 성격이기 때문에 감면을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소위원장 김교흥 뒤에 농어업인 그것도 또 있어요.

○정우택 위원 그런데 철도공사 감면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일부 세목은 그렇습니

다.

○정우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충된단 말이에요. 철도공사 감면은 유지하고 농어업 부문 감면은 줄이는 것이 좋다, 이건 불합리한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희들이 세율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담세력도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담세력을 좀 판단했습니다.

○정우택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 성격이라는 것은 같은 수수료 성격인데 어디는 그대로 유지하고 이것은 감면을 줄이는 것이 불합리하다 하는 것은 서로 상충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같은 수수료 성격인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본적으로는 수수료적 성격인 등록면허세는 감면을 종료하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담세력이라든지 다른 과세 원칙을 판단해서 존속을 필요로 하는 것은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차관님, 뒤의 37쪽하고도 이게 연동성이 있는데 지금 농어업인들이 굉장히 힘들고 여러 가지로 열악한 상황 속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이 등록면허세는 그래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뒤의 37쪽하고도 연동이 되는 것 아니에요? 용자 관련 이 부분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이것은 납세자 대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농업인 같은 경우는 조금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지금 어업권·양식어업권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좀……

○소위원장 김교흥 그것은 구분할 수 있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종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아, 농업인은 해 주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것은 좀 이따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논의를 어떻게 해요? 오늘 이 법안을 처리해야지.

○송재호 위원 차관님, 제가 정부 측 의견은 이해는 하는데 이 양식·어업이 농외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업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혜택을 좀 더 줄 필요가 있어요. 현재 어업으로 인정을 안 해요, 모든 조세상. 그러니까 면세 한도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이것 형평성 문제도 있고 등록면허세는 그냥……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지요. 그냥 살려 두는 게……

○송재호 위원 살려 두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지금.

○정우택 위원 저도 송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위원장 김교흥 우리 정우택 부의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정우택 위원 아까 수수료 성격 같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장한 게, 사실 같은 수수료 성격인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그 얘기를 지적하니까 또 담세력 얘기를 하시는데 담세력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대출 부대비용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자율은 결국은 농어민한테 이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 차원은 담세력,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은 농어민들한테 조금 더 부담을 완화시켜 주자 그런 입장이라면 우리 안을 정부도 좀 받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다음 6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용할 여지는 조금 있는데요. 지금 이어업권·양식업권에 관해서는 이번에 종료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 액수가 얼마나 돼요, 양식·어업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체 한 1000만 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얼마 되지도 않는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거기 보시면 기준 건당 한 2만 2780원인데요. 1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재호 위원 유지하십시오.

○소위원장 김교흥 이거 해 주지요. 왜냐하면 지금 어업에 종사하는 분도 되게 어렵잖아요. 여태까지 해 오던 것을 여기서 또 정리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상황이, 차관께서 용단을 내려서……

○정우택 위원 비용도 크지 않고 그러니까 농어민 위해서 이것은 한 50% 감면해 주는 것, 유지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50%로 하든가.

○천준호 위원 일몰기한 연장하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일몰기한은 정리가 됐고, 등

록면허세……

○송재호 위원 송재호 의원안대로 가십시오.

○조응천 위원 송재호 의원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농어민 전체 지원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저희들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정우택 위원 그런데 송재호 의원안은 5년 연장이네요.

○소위원장 김교흥 5년이 아니라 3년 연장하고……

○송재호 위원 이쪽은 3년입니다, 3년.

○소위원장 김교흥 3년이에요, 3년.

○조응천 위원 25년이니까 3년이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3년이고 등록면허세 100%.

○조응천 위원 3년이고 등록면허세는 손 안 내고.

○정우택 위원 나는 왜 송재호 의원 5년 안으로 되어 있어, 자료에?

○송재호 위원 저 앞엿것, 저 앞엿것이 5년 안이었는데 3년으로 제가 그냥……

○정우택 위원 제 안도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같다 이 말씀을 내가 강조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정우택 위원 송재호·정우택 안으로 합시다.

○소위원장 김교흥 예, 정우택 안까지 포함해서. 37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 관련 감면 등 관련 내용입니다.

12건의 개정안은 농협 등이 농어업인에게 용자 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이며, 감면 규모는 2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거 논의사항입니다.

21년 12월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감면율을 50%로 유지하면서 일몰기한을 우선 1년 연장한 후 올해 재논의하기로 하였다는 점입니다.

비용 전가 관행 차단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농어업인의 등기 비용 부담이 전가되던 관행이 차단되었다는 내용이고, 세목 특성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은 역시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다 하는 측면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이에 반해서 농촌조합의 낮은 담세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특히 우회적 비용 전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정점식 의원안은 후계농어업인 등에 대한 감면율을 10%p 상향하고 있는데 농어업의 경영 의사가 있기만 해도 이에 해당될 수 있어서 감면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혼선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당권 설정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관행이 있는데 이 관행은 어느 정도 근절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농협 조합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도 충분히 담세력이 있는 점,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이번에 감면을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작년에도 1년 한시적으로 연장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고 일몰 종료를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우리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김용판 위원님.

○김용판 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야기대로 결국 이게 그렇게 되면 우회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농어민을 보호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앞과 같은 맥락으로 김용판·정우택·송재호 안대로 이것도 3년 일몰 연장하는 게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3년 연장하고, 감면율도 50% 그대로?

(「예」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은 실제 저희들이 내용을 보니까 1118개 조합 중에서 적자를 기록한 게 농협 같은 경우는 3곳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담세력이 충분하다는 것이고 적자 때문에 소비자에게 이것을 전가한다는 그런 것은 우려가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 논의할 때도 사실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다시 재논의하기로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협이라든지 수협에 충분히 담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종료를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하는

그런 안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조웅천 위원님.

○조웅천 위원 차관님께서 담세력 말씀하시는데 단위농협이라도 시 지역 농협하고 군 지역, 농촌 지역 농협하고는 담세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단위조합의 당기순이익, 21년도를 보면 시 지역은 22억 정도가 되고 군 지역은 9억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촌 지역에는 다른 금융기관들의 점포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점포들은 농촌 지역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4대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에는 전국을 다 합쳐 봐도 한 170개, 전국 다 합쳐서 170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조합은 2400개가 넘는 점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면 여부를 따짐에 있어 가지고 담세력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감면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정책 목적을 봐야 된다고요.

지금 자꾸 지방소멸 얘기하시는데 이것 등록면허세에 대해서 수수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비를 한다, 법적 성격이 그렇다고 해 가지고 정책 목적을 도외시하고 그냥 뒷박으로 밀듯이 썩 다 밀어 가지고 농어촌 황폐화되면 그게 우리가 법적으로 정비했다 해서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겁니까? 현실을 도외시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몰을 연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판 위원 좀 전에 차관께서도 전 항목 검토할 때 '6번은 수용할 여지가 있어도' 이렇게 단서를 달지 않았어요?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감면율을 조정하는 게 어떤가 건의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왕 하는 것 그냥 하지요. 50%인데 여기서 또 뭘 조정을 해.

○김용판 위원 농어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소위원장 김교흥 일단 차관님, 우리 위원님들 거의 다 동의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해서 3년만 연장하고 그 뒤에 또 한번 논의하는 걸로……

○박성민 위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260억 정도 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이번까지는 일몰 연장하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러면 작년에 1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3년을 연장하기보다는 기간을 조정하는……

○김용판 위원 앞에 다 3년 했는데 그냥 갑시다.

○조응천 위원 계속 3년인데 왜 이것만 따로 해?

○소위원장 김교흥 작년이 잘못된 거예요. 작년이 잘못된 거고, 저는 그냥 그대로 3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관님이 그것까지는 좀 양해를 해 주세요.

○조응천 위원 그냥 갑시다.

○박성민 위원 한 5년 하십시오.

○소위원장 김교흥 여기 10년도 있는데……

3년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차관님. 고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위원장님, 방망이 쳐 버리세요.

○소위원장 김교흥 이게 지금 방망이 칠 때가 아니야.

○김용판 위원 그러다가 농민, 어민의 공공의 적 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아니, 차관님 왜 자꾸만 기간 조정을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작년에도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요, 올해도 다시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여러 가지……

○조응천 위원 농촌은 여전히 힘듭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차관님, 그 기간을 5년으로 하자 이 말씀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감면율이라든지 감면기간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송재호 위원 3년으로 하지요. 다 3년 하는데 이것만 1년 하기도 그렇고……

○소위원장 김교흥 보통 일몰제 이것은 3년이잖아요. 작년에는 아마 조율하면서 1년으로 된 것 같은데……

○조응천 위원 농촌에 한번 가 보세요.

○소위원장 김교흥 지금 농촌이 되게 어려워요, 사실.

○김용판 위원 3년으로 하십시오.

차관님, 그냥 하세요.

○소위원장 김교흥 그냥 3년으로 해 주시지요.

○조은희 위원 만장일치인데요.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들 반대가 1명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감사합니다.

다음은 41쪽, 수석전문위원 말씀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에 대한 감면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일부 사업의 감면율을 조정하며 별도의 추정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연간 감면 규모는 약 272억 원이 되겠습니다.

김수홍 의원안은 일몰기한 5년 연장, 안호영 의원안은 일몰기한 3년 연장,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한해 2024년까지 재산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25년까지는 현행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정부안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감면율 등을 일부 조정하는 한편, 별도의 추정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제1호에서 일부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종료 및 대상 축소인데요. 1번 농지매매사업부터 5번 농지법상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 감면 대상을 부동산에서 농지로 축소하고 재산세 감면을 폐지하는 것은 공사가 비농업인으로부터 취득한 농지를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보급하는 사업의 특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의2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재산세 감면율 상향은 농어촌 용수 개발, 경지정리, 배수 개선사업 등 농업인에 대한 농업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확대한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 추정 규정 신설은, 공사의 농지매매사업 등은 비농업인으로부터 취득한 농지를 농업인에게 매매·임대하는 내용으로 취득일로부터 2년

경과 전 매각·증여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정한다는 일반 추정규정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개별 추정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감면은 연장하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안대로 감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일몰기한은 3년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말씀 없습니까?

○김용판 위원 정부안대로 가시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안대로 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정부안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9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유통공사와 유통자회사의 농수산물유통시설 및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지방세 경감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으로 연간 감면 규모는 약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몰 연장 관련해서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 통상적으로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52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2쪽입니다.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감면 연장입니다.

개정안은 공사의 도매시장 관리 및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면 규모는 약 30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특례 연장 필요성

이 인정된다고 보이고 통상 3년 이내의 기간이 정해져 왔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등록면허세 면제 종료와 관련해서, 등록면허세는 역시 수수료적 성격의 세금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등록면허세 관련 사항인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감면 종료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천준호 위원 건별로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4만 7300원이 건당 감면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인보다는 법인, 공사에서 등록면허세를 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교흥 이것 공사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정부안으로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57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대한 감면 관련입니다.

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공단의 담세력이 낮다는 점 등을 감안해서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59쪽이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관련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가 이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제삼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직접 사용의 정의와 저축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방세 감면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또 현행법상 제2조의 직접 사용의 정의하고도 저축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토대로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직장어린이집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가 더 많지요? 몇 프로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한 55% 정도……

○소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우리가 저출산 문제도 있고 또 기업이 어린이집을 많이 지어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가 앞으로 늘어날 텐데 이런 걸 위해서는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직접 사용 여부만 가지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담당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국장님 말씀 주세요.

○천준호 위원 이게 어쨌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용도가 분명하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용도와 목적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것에 맞게끔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취지를 살리는 게 좋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국장님.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진명기 행안부 지방세정책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이라든가 인구감소 측면이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직접 사용 범위는 우선 우리 지방세특례법의 대원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 이걸 허용을 하게 될 경우 사회복지라든가 학교라든가 다른 여러 쪽에 파급되는 효과도 저희들은 무시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린이집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탁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산세를 10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예비타당성검토라도, 이런 걸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중검토 의견인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천준호 위원 이게 법안이 제출된 게 언제입니까?

○소위원장 김교흥 아니, 손을 들고 말씀하세요,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법안이 제출된 시점이 언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22년 7월입니다.

○천준호 위원 22년이요. 그사이에는 검토할 시간이 없으셨나 보네요. 타당성검토를 할 시간이 그때는 없어서 앞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런 기본원칙하에서 직접 사용이 다른 세무하고도, 다른 건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몰 도래 기한이 24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이게 취득세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용도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에는 직접 사용한다라고 하는 걸로 매입을 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은?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탁 운영을 했을 경우에도 취득세를 100% 면제하면 추후에 환급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까?

과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관 진명기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한다고 해서 우선 취득세를 감면을 받고 만약에 나중에 위탁이라든가 제 목적대로 하지 않고 추정 요건이 되면 추징하는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추징을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구먼. 만약에 추징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경우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위탁, 사용할 목적으로……

○이해식 위원 처음부터 위탁할 목적으로 취득했을 경우에는 면제를 해 주고.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이미 있는 토지라고 그래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사후적으로 추정에서 배제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다른 위원님들 말씀 없으십니까?

정우택 위원님.

○정우택 위원 지금 여기 자료 보면 2021년의 감면 건수가 538건밖에 안 돼요.

전국 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엄청 많은데 감면이 538건밖에 안 되면 내 생각에는 거의 다 위탁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조은희 위원 절반이에요, 직장어린이집이 1200개니까.

○정우택 위원 그러니까 위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같은 이런 공익적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직접 사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물론 우리 담당 국장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래서 이 위탁 규정도 예외적으로 면제를 해 줘서…… 아까 저출산 문제도 나오고, 보육수당 확대도 우리가 좀 장려하는 측면에서 이것 해 줄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이 거의 다 동의를 하시는데 이게 일몰이 24년이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아직 시간은 좀 있으니까, 우리가 3월 달에 또 하고 계속 법안 심사할 건데 행안부에서 이거에 대한 안을 좀 갖고 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직접 사용이든 위탁을 주는 목적이 분명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면 감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외조항을 두셔도 좋고 어떤 혜택을, 감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잡아서 다음번에 저희 회의할 때 그때 주시면서 이걸 진행하면 어떨까요?

○조은희 위원 좋습니다.

○천준호 위원 저 의견이 있습니다.

24년 일몰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100% 감면하는 것이 24년 일몰기한이라는 것이고요.

이 수정안의 취지는 직접 사용하지 않는 위탁 운영 부동산에 대해서,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사후에 추정되고 있는 취득세 감면 조치를 해 달라 이런 얘기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취득세의 추정 과정들을 중단시켜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네요. 그것은 좀 다르네

요.

○천준호 위원 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교흥 예, 맞습니다.

○천준호 위원 지금 저희가 판단을 해 줘야만 위탁 운영할 때 부당하게 추정되는 취득세에 대해서 저희가 막을 수 있다는 의견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알겠습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그런데 저는 좀 보류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일몰은 2024년인데 그때 어떻게 할지 우리가 입장을 다시 정해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직접 사용하지 않고 위탁하는 데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버리면 2024년에는 그러면 다 똑같이 일몰하지 않고 해 주겠다는 어떤 예시적인 성격이 있거든요.

○소위원장 김교흥 사실은 다 해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조은희 위원 그래서 이게 급하지 않으니까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저희들을 설득시키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아마 우리 행안부에서도 고민을 한 거니까 시간을 이렇게 많이 드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금요일 날도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고려해서 금요일 날 다시 우리가 이걸 첫 번째로 논의를 하고 진행하는 걸로 하고 그때까지 안을 좀 갖고 오시면 어떨까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천준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가 또 현재 위탁하는 현황이 어떤가를 참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걸 한 번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내용입니다.

8건의 개정안은 현행 사회복지사업 관련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조항의 일몰규정을 연장·폐지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21년도 연간 감면 규모는 약 294억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표에 보시면 김용환 의원님 안부터 서영교

의원안 그리고 정부안까지 되어 있는데요. 정부안은 감면 내용을 조정하고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고 일몰기한을 25년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의 정부안을 확대해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행과 정부안의 비교표인데요. 감면 대상을 보시면 1번에 사회복지법인, 2번에 한국한센복지협회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은 정부안에서 감면 대상으로 동일하고 감면 내용도 현행과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3번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양로, 아동양육, 한부모가족복지, 한센병요양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부안은 유료와 무료로 나누어서 무료인 경우에는 취득세 50%·재산세 50%, 유료인 경우에는 취득세 25%·재산세 25%로 나누고요. 그다음에 네 가지 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전체로 확대하는,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 주민세 면제 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추가하는데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주민세만 면제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자택으로 파견하는 이런 업무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부동산보다는 주민세를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로 감면 내용에서 정부안은 조례로 50%p를 상향해서 감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별로 아까 무료의 경우에 취득세 50%가 취득세 100%, 재산세 50%가 재산세 100%까지 가능하고요. 유료인 경우에는 취득세 25%가 75%, 재산세 25%가 75%까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건의를 드립니다.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소납부세제는 감면 전반에 대해서 적용되는 원칙인 점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지방정부하고 협의 좀 했나요? 지방정부가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여러 가지 토론회 절차를……

○소위원장 김교흥 이게 지방정부의 부담이 늘잖아요, 세액.

아직 협의 안 하셨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아닙니다.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거쳤고요. 큰 이견은 없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견이 없다고요, 지방정부에서? 이견이 있던데? 이견이 없을 리가 있나.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정부안에 대해서 큰 반대는 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송재호 위원 지방정부에서 50% 추가 감면을 조례로 할 수 있잖아요, 하고 싶으면.

○소위원장 김교흥 그건 지방정부에 부담이 되는 거지, 결국은.

지방정부에서 이것 반대가 좀 있던데.

조은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자치단체장 한 분들이 조금……

○조은희 위원 제 의견을 굳이 말씀드리면 전체로 확대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요. 무료로 하는 것은 종전처럼 100%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유료로 하는 것도 50%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식 위원 동의합니다.

○송재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해식 위원님, 박성민 위원님 다 동의하시지요?

○박성민 위원 예.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이견 좀 조정해 봐야 돼요. 제가 보기에 지방정부는, 행안부에서 얘기하니까 어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희들이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50% 적용하는 것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안을 만든 겁니다.

○이해식 위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례를 통해 가지고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은희 위원님 안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어떠세요? 조은희 위

원님이 제안한 조정안대로 무료는 100%, 유료는 50% 이렇게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자치단체가 관할 사회복지법인 단체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지원 하는 측면에서는 조례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래요?

이것은 차관님이 강하신데.

무료는 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하지요, 사회복지시설에?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이게 지금 3000개에서 1만 1000개로 늘린 겁니까, 확대를?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많이 늘렸네. 늘린 건 좋은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이번에 대폭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확대된 거는 굉장히 좋은 의미인데 무료는 좀 그렇네요.

○**이해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취득세 같은 경우는 주로 광역세이고 재산세는 기초세인데 광역세 같은 경우는 조례로 어느 정도는 원활하게 할 수는 있지만 기초세 같은 경우는 하기가 매우 힘들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광역세라 하더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또 제가 볼 때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정부에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정부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 거의 사문화 규정을 두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료 시설에서는 100%, 취득세·재산세 공히 그렇게 하고 조은희 위원님 안처럼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유料的 경우에는 50%로 하는 것으로.

○**소위원장 김교흥** 조은천 위원님.

○**조은천 위원** 어떻게 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에 취약계층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으면 자치단체는 또 부담이 늘어나겠지요.

그런데 이걸 조례로 50%를 더 가산해서 지원

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워낙에 재정자립도가 30%도 안 되고 20%대밖에 안 되는 그런 기초단체에서는 이걸 마음만 있지 도대체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데가 태반일 겁니다. 그래서 지역 격차가 더욱더 심화될 그런 우려가 있다, 이걸 지방자치를 고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당초 의도와는 달리 지역 격차를 고도화시키는 그런 쪽으로 아마 결론이 나기가 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래도 빈익빈부익부로 갈 것 같은 그런 안이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이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하고 사회복지법인하고는 설립 허가 요건에 차이가 있다는 것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지만 설립 허가라든지 또 재산 관리 등에서 두 개가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복지법인에 지원하는 감면 혜택하고 시설은 좀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걸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한 거고요. 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체에 따라서 공익성의 차이가 좀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기여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치단체가 판단을 해서 5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 겁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게 논의가 접점이 잘 안 잡히는데 다음 회의할 때 이걸 다시 한번 행안부에서 안을 좀 가져오세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소위원장 김교흥** 특례제한법도 오늘 다 못 할 것 같아서, 오후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전까지만 하는데 이거는 내일까지 안을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83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관련입니다.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 특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홍성국 의원안은 감면 요건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 자동차를 민법에 따른 법정

상속 지분대로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도 부과되는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홍성국 의원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급성, 다자녀 가구 지원의 확대 추세, 지방재정에 부담을 유발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정부안은 다자녀 양육자 일방이 사망하면 배우자와 자녀가 민법 및 현행법에 따라 자동차를 공동상속 및 공동등록하게 되어 이를 양육용으로 계속 사용하여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불가능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제도개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대부분 다자녀 지원 체계가 기존의 제도는 3자녀 기준입니다. 그래서 2자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이고요.

저희들 정부안대로 다자녀 양육자 사망과 관련해서는 일부 제도개선을 한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까?

○천준호 위원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2자녀는 왜 안 되는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일단 현재 자녀 3명 이상을 둔 가구가 51만 가구인데 2명을 둔 가구는 4.7배, 그래서 한 5배 가까이 대상이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현행 법령 제도가 3자녀로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쪽 파트에서 감면을 먼저 하는 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도 지금 25년도에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차원에서 3자녀 가구의 기존 제도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는 그런 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천준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정부의 정책기조나 방향에 일치한다고 보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체감도가 높은 정책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인 기조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방향이 정해지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 대응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

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확대가 되었을 때 어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는지, 그 뒤에 있는 게 그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3468억 원 정도 감면인데 저희들도 지방세 측면에서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천준호 위원 한 해에 그렇다는 겁니까, 쪽 누적했을 때 그렇다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매년입니다. 단년도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매년이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일몰기한이 24년이기 때문에 그때 도래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우택 위원 세 자녀로 그냥 놔두시는 게 어떻습니까? 정부안대로, 세 자녀로 그냥 두고……

○소위원장 김교흥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이게 자동차세가 자치단체에서, 기초에서 유일하게 받는 눈곱만한 거거든요. 이것을 또 2자녀까지로 해 버리면 더 재정이 열악해집니다. 정말 눈곱만한 게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절반인데 거기다 이걸 또 두 자녀까지 왕창 잘라 버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조금 보류해 보시지요, 정부안대로.

○소위원장 김교흥 이건 보류할까요?

보류하지요.

○천준호 위원 아니, 일단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정우택 위원 아니, 보류가 아니로 세 자녀로 그냥 두자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세 자녀로?

○김용판 위원 현행대로 그대로 두는 걸로 하고요.

○조은희 위원 세 자녀로 두고 추가적으로 논의하면 어떨겠냐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이것 반대가 있으니깐.

○천준호 위원 일단 심사하는 과정이 됐으니깐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쭙보고……

그러면 이게 개별 자치단체당 평균 얼마 정도의 금액입니까, 2자녀로 했을 때 감면되는 금액이? 대략 한 3억, 5억 정도 되나요?

지금 연간 600억 정도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에 200개로 추산하더라도 평균 3억 정도 되겠네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2억 500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천준호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지금 세 자녀는 100%잖아요. 그러면 2자녀는 50%, 단계별로 가지요. 이건 어때요?

○**조응천 위원** 2자녀 하면 3000억으로 늘어요.

○**소위원장 김교흥** 아니, 50%만.

○**조응천 위원** 그러니까 감면이 3000억이라고.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안 되나?

○**조응천 위원** 3000억의 50%면 1500억인데……

○**송재호 위원** 이것은 두 자녀가 정부 정책상 맞는데 이것 바꾸게 되면 싹 바뀌야 되니까 그것을 안을 나중에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조은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종합적으로?

○**송재호 위원** 예, 지금 세 자녀를 기준으로 조세 체계가 되어 있는데 두 자녀로 바꾸면 싹 바뀌어야 이것만 바꾸기는 그렇잖아요.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말씀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래서 저출산·고령화 전반적인 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행안부가 지금 관리하는 세제 체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요즘 한 자녀가 많잖아요. 한 자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두 자녀를 뒀을 때 그래도 50%라도 좀 감면해 줘서 유인책을 쓰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조응천 위원** 이것 깎아 준다고 애 더 낳나?

○**소위원장 김교흥** 아니, 뭐 꼭 이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게 가면 되지.

○**조은희 위원** 이것 깎아 준다고 애 더 낳는 것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 재정만……

○**소위원장 김교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 아기를 낳아야겠다 이런 게 되지.

○**조은희 위원** 그것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다……

○**김용판 위원** 행안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조응천 위원** 검토시키시지요.

○**조은희 위원** 이천몇 년에 한다고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25년도 계획인데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가야 된다고 보고 있지만……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행안부에서 이걸 검토하셔서 나중에 우리 회의 때, 전체회의나 할 때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천준호 위원** 제가 의견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덧붙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아니아니, 그건 그렇게 정리하고, 천준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천준호 위원** 그래서 저는 다자녀 기준이 3자녀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자녀도 귀한 시기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참에 2자녀를 다자녀로 두는 정책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행안부 차원에서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다음 87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자녀양육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입니다.

18세 미만 자녀 1명 이상을 둔 사람이 해당 자녀들과 거주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자녀 수에 따라 50%까지 경감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인구절벽 위기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검토의견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시급성, 다자녀 가구 지원의 확대 추세, 지방재정에 부담을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아까 건과 유사한데요.

다자녀 지원 체계가 아직 주로 3자녀 기준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점이랑 지방세의 부담과 관련해서 저희들 신중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게 지방세에 크게 영향을 끼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희들 이것 한 1300억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1300억?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면 전체 지방정부 따져 보면 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여간 제가 보기에야 아까 것과도 이게 연동이 되는 건데 지금은 아이 하나 낳기도 잘 안 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걸 연차적으로 뒤서, 아까 조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 한다고 해서 아기를 더 낳겠느냐 이런 논리도 있겠지만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건 행안부에서 꼭 검토를 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정부 전체적으로 관련 제도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걸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법률구조법인 고유업무 부동산 관련입니다.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이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구조사업을 수행하는 법률구조법인의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92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한국소비자원이 고유업무를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건의 및 소비자 피해구제 등 한국소비자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익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송재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94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근로복지공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공익성 등을 감안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십니까?

96쪽 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산업재해예방시설의 설치·운영 업무를 위하여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공익성이 높고 또 수익을 내기 어려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특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98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근로자의 평생학습 지원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업무의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0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생업활동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등록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이 명확하지 않아서 감면 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혼선 가능성 그리고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별도 규정으로도 감면이 가능하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면 범위의 제한 필요는, 현행법이 감면 대상이 되는 차량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친환경자동차에 대해서도 감면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저희들 현재도 이미 친환경자동차가 중형 크기에 해당하면 해당 조문에 의한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조항은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안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송재호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3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 그리고 수행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할 때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5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임대기간 30년 미만인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을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임대기간이 30년 미만인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에 재산세 감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칙은, 개정안은 임대주택에 대한 2022년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개정안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는데 규정 미비로 인하여 특례가 적용되지 못했던 대상자들에 대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감면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차원의 개정안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8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임대사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해당 특례는 21년 국회 논의를 통하여 일몰기한이 이미 연장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21년도에 이미 국회 논의를 거쳐서 일몰기한이 연장된 사안이기에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1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임대용 주택을 건축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한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 부동산 및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 필요성을 고려한다면 특례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일몰기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대책인 점과 국세와 연계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인 정부안을 건의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113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2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해당 특례는 21년 국회 논의를 통해서 일몰기한이 이미 연장된 사안이라서 별도의 개정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일몰기한이 24년까지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5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관련 사항입니다.

8건의 개정안은 생애최초 구입 주택의 취득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 주택가액 및 소득요건 등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21년 기준 연간 감면 건수는 12만 5998건이고 감면 규모는 1606억 원이 되겠습니다.

표에 나와 있는 의원님들의 안을 비교해 보면 주택가액과 소득기준, 감면율 등이 다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만희·노용호 의원안은 주택가액에 있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소득기준에 있어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다만 감면율에

있어서 100% 면제를 하되 상한을 200만 원 한도 내로 캡을 씌워 놓은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택가액기준과 소득기준 관련해서 폐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상향 또는 폐지될 경우 감면 혜택 대상자 수가 증가해서 더 많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세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에도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점, 감면 확대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감면율에 있어서 이만희·노용호 의원안은 감면기준과 관계없이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100% 면제시키고 있는데 이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감면액을 상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혼 배우자, 미성년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인 사람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태영호 의원안입니다. 배우자의 범위가 넓어지면 생애최초 요건에 해당하기 어려워져 감면 대상이 축소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17페이지입니다.

미성년자를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보다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전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면 대상에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는 주택과 과세 체계가 다른 점 그리고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3년 연장, 일몰기한 자체 폐지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있고요.

부칙과 관련해서는, 감면 적용되는 주택의 구입시기와 관련해서 개정안 시행 이후, 개정안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그리고 2022년 6월 2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로 의원님 안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117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좌측 아래 부분을 보시면, 2022년 6월 21일 정부가 부동산정책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발표일 이후부터 법 개정 시점 사이에 해당하는 기간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국민들에 대해서도 법 개정 이후 개정법률에 따라 차액을 환급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차관님, 이것을 정부에서 이렇게 법도 통과되기 전에 미리 발표를 하면 국회는 뭐가 되는 거지요? 이런 게 꽤 있어요. 입법예고 한 것도 많아, 입법예고.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모레 할 것 보면 입법예고를 먼저 해 버려요,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국회는 거수기입니까? 논의도 안 된 것을, 법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논의하는 걸 미리 이렇게 발표를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물론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런 건 분명히 각 부처에다 얘기를 하고 법 개정도 되기 전에 입법예고 하는 거 이것 빨리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차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작년 상반기는 부동산 관련해서 정부의 대책이 절실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 그런 안을 준비했었고 또 입법 관련 시기는 연말에 관례적으로 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불일치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정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하는 경우가, 관례대로 그렇게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관례가 그게 좋은 관례가 아니고요. 그리고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입법예고 하는 것도 정말로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지.

그리고 이렇게 정부가 안을 발표했는데 국회에서 만약에 법안을 부결시키거나 아니면 보류시켰다, 우리 위원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이 봤을 때 정부는 좋은 사람들, 국회의원은 나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해, 특히 이런 법안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가 이것 정신 차리셔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셨지요?

차관님, 입법예고 건과 정책을 발표할 때 법의 개정사항은 국회에서 개정이 된 뒤에 하세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저는 이 건은요……

○소위원장 김교흥 이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조은희 위원 예,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토론할 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 건은 그런 것 아니에요.

○김용판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교흥 김용판 위원님.

○김용판 위원 입법예고는 원래 입법 절차에, 입법의 의견수렴 과정이거든요. 법 만들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법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입법을 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라, 그렇게 받아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정부 입법이 국회에 넘어 오면 그때 논의하는 거거든요. 약간 다르지요.

입법예고는 원래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안 하면 그건 위법이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님 말씀대로 입법예고는 국회에 입법 제출하기 전에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입니다.

○김용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

○소위원장 김교흥 아니, 국회 법 개정 뒤에도 입법예고 하는 거지, 개정을 한 뒤에도.

제가 시행령 입법예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행령 만들 때. 법이 개정된 뒤에 시행령 만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입법예고를 미리 해 버린다니, 법이 개정되기도 전에.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이 통과돼야 되지만……

○소위원장 김교흥 저는 지금 그 얘기예요. 법이 개정돼서 시행령을 만들 때 입법예고를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 미리 해 버린다니, 시행령 말씀드린 거예요.

○김용판 위원 개정을 전제로 해서 미리 한다 이런 취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단 얘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런 상황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상위법을 위반해서는 시행령을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교흥 없어요? 내가 지금 불러 줘?

지방세기본법에 세무조사 범위 확대 금지의 예외 신설, 지방세징수법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신설, 지방세법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의 범위 명확화 등등 해서 많아, 이렇게. 내가 아예 뽑아 왔어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건 아마 기존의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아니야, 그렇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잘 조정해 보세요. 여기 지금 시간 없는데 그것 가지고, 내가 분명히 말씀은 드린 거고……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그래서 이 안과 관련된 정부안이 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정부 대책을 작년 6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택가격과 연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취득세 수혜 대상을 많이 확대하자는 그런 게 가장 기본 의견입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요건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소득기준을 기존에 제한해 오면서 문턱효과라는 게 있었는데요. 문턱효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가 주도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서 감면 한도는 기존의 200만 원 한도로 제한을 하고 그렇게 정부에서 발표를 한 적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이만희·노용호 안이네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기본적으로 이만희 의원안하고 비슷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 주세요.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저는 대한민국 하늘 아래서 젊은 이들이 처음 시작할 때, 누구든 시작할 때 생애최초로 내 집은 가지게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선 때 그게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은 좋은데, 제가 단지 우려하는 것은 50억짜리 집도 생애최초의 집이라 하나.

○**소위원장 김교흥** 그렇지. 바로 그거야. 그게 문제야.

○**이해식 위원** 그게 문제지.

○**조은희 위원** 그래서 저는 그 기준을 중부세 기준으로 하면 좋겠어요.

○**소위원장 김교흥** 조은희 위원님 안에 적극 동

의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세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은희 위원** 중부세가 지금 기준이 얼마나 됩니까?

○**이해식 위원** 중부세 기준이라는 게 뭐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12억이지, 12억.

○**송재호 위원** 12억.

○**이해식 위원** 12억?

○**소위원장 김교흥** 가액, 주택가액을 12억으로 놓자는 거지.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맞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응천 위원** 안 그래도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조은희 위원** 아, 그랬어요?

○**송재호 위원** 옳으신 말씀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위원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수용을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30억짜리 집 사는 데도……

○**조응천 위원**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저는 조은희 위원님 안에 적극 동의합니다.

○**조응천 위원** 그것 최소한의 제한입니다.

○**이해식 위원** 잠깐만,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소위원장 김교흥**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 지금 여기 보면 8건의 개정안과 관련해서 연간 감면 건수가 12만 5000여 건이고 감면 규모가 1606억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추산이 된 거지요? 이게 지금 이만희·노용호 의원안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아니, 이것은 현행 안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이해식 위원** 현행, 지금 현재 그렇다 이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습니다. 현재 기준에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안대로 하면, 정부가 6월 21일 날 발표한 그 안대로 하면 감면 액수는 어느 정도 늘어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41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위원** 4100억으로 예상한다고요? 그러면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거네.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면 조은희 위원님 안을 주셨는데 그것도 아마 추산을 한번 해 보긴 해 봐야 될 텐데……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것 법안을 냈습니다. 냈는데, 조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취지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제 감면혜택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취지에 동의를 했고 또 역시 대통령 선거 때 공약이기도 해서 냈는데 문제는 사실 이런 법안을 발의하게 되면, 결국 취득세를 감면해주면 지방세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광역세이지만 그 광역세의 또 기초세의, 기초 지방정부의 조정교부금 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제한을 풀어 가지고 4000억 이상의…… 제가 볼 땐 4000억 이상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부동산 경기에 따라 또 달라질 거고 그렇게 보면 지방정부에 상당히 심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 반드시 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하거나 아니면 보전 대책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저는 정부의 조치는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조은희 위원님 안으로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한 보전 부분 혹은 지방정부와 상의하고 협의하는 부분, 그 부분들은 행안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지방정부와 상의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보전은, 저는 그것까지 넣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 관련해서 지금 정부가 2조 원을 2025년인가 4년에 지방으로 다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생애최초 주택을 사는 데 종부세 기준으로 하면서 그것도 정부가 보조해 준다면 지하철 요금도 정부가 보조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정부는 빚더미에 앉게 되는 거니까 지방정부와 협의하라는 정도 선은 저도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가 보전하라는 것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이해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전액을 다 보전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우선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법의 변경, 특히 이걸 정부 정책의 변경이거든요. 우리가 법안들을 다 내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정부가 6월 21일 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폭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줄어든다면 그때마다 정부는 보전을 해 왔습니다. 보전을 해 왔고 보전책을, 그러니까 이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 때는 정부가, 특히 박근혜정부 때 취득세를 거의 면제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수단을 강구를 해 왔던 거고 그럴 때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모아놓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보전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 박근혜정부 때 취득세 감면 부분을 보전한 게 지방소비세를 당시에 6%인가 올려준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보전을 해 왔기 때문에 저도 이게 추산을 해 보고 상당 부분 지방정부의 재정에 영향이 가는 경우면 행안부에서는 보전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논의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교흥**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 생애최초 구입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자는 취지는 대략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득기준의 제한을 좀 없애자고 하는 취지도 대략 다 동의는 하시는데 다만 주택가액을 얼마로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략 심정적 동의 수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감면 규모가 형성이 될지 또 그게 지방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추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요일 날 어차피 한 번 더 논의를 하기로 하였으니 그때까지 추산을 좀 해 오서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정확하게 주택가액 규모를 산정하면 어떨까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금 천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12억으로 했을 때 한 200억 정도 아마 지방세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한 41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했었는데요. 12억을 상한선으로 정한다면 한 3900 정도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3900억, 그 정도면 됐네요.

그 정도면 됐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소득기준은 풀어요?

○조은희 위원 소득기준은 풀어 주고요, 집값만 해 주면 돼요.

○정우택 위원 의미가 없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소득 기준은 의미가 별로 없지요?

○송재호 위원 예.

○소위원장 김교흥 조응천 위원님.

○조응천 위원 사실 그동안 2030 MZ들의 불만이 부부합산 소득기준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남자는 돈 벌고 여성은 가사를 하고 육아를 하고 이런 분업을 하는 걸 전제로 가정을 꾸리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 보면 다 맞벌이, 거진 다 맞벌이입니다. 그리고 맞벌이를 해야지만 집을 어떻게든 구할 엄두라도 낼 수가 있지요.

그런데 맞벌이를 하다 보면 종전의 부부합산 7000만 원은 무조건 넘어가는 거지요. 그래도 공부 좀 하고 사회에서 만나 가지고 우리 빨리 집 구하자, 그래도 좀 제대로 살아 보자라고 하려면 부부합산 소득에 다 걸려 가지고 이게 무슨 생초냐라고 하는 데 집중됐기 때문에 그 취지가 안 맞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부합산은 이만희·노용호 의원안대로 ‘제한 없음’으로 하고, 다만 종부세 기준인 12억으로 하더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구분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다 12억으로 합니까? 모든 법률안이 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을 했는데 이것은 구별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은희 위원 저는 구분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수도권에 가서 12억 정도 살 수 있으면, 세금 감면해 주면, 비수도권 가면 지역균형발전에 더 좋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오케이, 알았어요.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세요?

○송재호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똑같이 12억?

○조응천 위원 예, 간명하게 종부세 기준으로 그냥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똑같이 12억으로 하고 부부합산은 없애는 걸로 하고 감면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해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요.

○소위원장 김교흥 예.

○이해식 위원 지금 이게 3900억이면 기초단체 별로 환산을 해도 거의 15억에서 20억 재정결손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큰 돈이에요. 이거는 보전과 관련해서 대책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본적으로 시도세고요. 지방세수가 부족……

○이해식 위원 시도세인데,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규모인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취득세는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3900억을 다 보전을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지방정부에 주는 재정에, 지방정부 재정에 영향을 미치니 이 부분에 대한 보전과 관련한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지방세수 결손액에 대해서는 교부세 배분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게 지금 이해식 위원이 말씀하신 게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교부세 나갈 때 그걸 감안해서 더 지원하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몰기한은 25년으로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일몰기한 3년 두는 거예요.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작년 6월 21일에 발표할 때 환급하는 걸로 발표했어요. 참, 그래서 내가 열 받아 가지고……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정부 발표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조은희 위원 발표 이후에는 해 줘야지요.

○소위원장 김교흥 6월 21일 날 발표할 때, 이 건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조은희 위원 안 해 주면 폭동 일어나지요.

○조응천 위원 해 줘야지.

○소위원장 김교흥 해 주는 거에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앞으로 정부 이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
에요, 제 얘기는.

○**천준호 위원** 그러면 환급해 줄 때 그 환급금
액은 어디서 마련이 됩니까?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에서 해 주는 거지요.

○**천준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부가……

○**소위원장 김교흥** 지방정부가 해야지. 그러니
까 그걸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라는 얘기에요.

○**천준호 위원**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다시 추징
을 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원
을 해 줘야 돼, 이거. 지원 안 해 주면 지방정부
난리 날 거예요.

○**조은희 위원** 알아서 적절히 하세요.

○**정우택 위원** 교부세 산정할 때 감안하라고 말
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교흥** 아까 차관님 얘기대로 교부
세……

○**조은천 위원** 그것을 부대의견으로 좀 만들어
서 넣지요, 우리가.

○**소위원장 김교흥** 부대의견으로 넣읍시다, 그
러면. 여기에 대한 지원책을,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에 지원할 때 반드시 이걸 넣어서 한다, 교부
세 등을 통해서 지원할 때 고려한다 이렇게……

○**이해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차관님이
교부세 얘기를 했는데 교부세는 사실은 재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지요? 내국세의 19.24로
딱 정해져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재
정의 결손에 대한 별도의 어떤 대책 이런 걸 얘
기를 했지 그걸 교부세 내에서……

교부세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기본적으로 교부세 배
분할 때……

○**이해식 위원** 배분할 때 조금 더 결손이 많은
데……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수입액하고 차액을 저
희들이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교부세를 배
분하고 우선순위에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도 포
함해서……

○**이해식 위원** 그렇게 되면 또 어떤 결과가 되
냐면, 결국 이게 수도권에 인구 밀집된 데는 더
주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균형발전에 또 문제
가 생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당하지 않고 대부분은

지방소비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그런 별도의 대책
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검토를 좀 하라는 얘기입
니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별도 검토해서 보고드
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걸 부대의견으로 달아 주
세요. 지원을 한다, 지원을 적극 고려한다.

○**조은천 위원** 더군다나 작년 6월 21일 정부 발
표에 의해 가지고 소급해서 이미 받았던 것도 전
부 환급까지 해 줘야 되니까……

○**소위원장 김교흥**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조은천 위원**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지금……

○**소위원장 김교흥** 예산을 다 편성했는데……

○**조은천 위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실질적
으로.

○**소위원장 김교흥** 이게 혼란이 오게 돼 있지
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중앙정부에서 지
원을 한다, 지원을 고려한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저희가 문구를 만들어서
내일 회의 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여 드리고 정
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내일 회의 때 주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법에 대해서는 다 정리됐
나요?

오피스텔은 추가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정리할
게요.

이의 없습니까?

○**정우택 위원** 제가 거기 넣었기 때문에 그런데
요새는 생애최초로, 오피스텔 그걸로 생활하는 사람
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피스텔이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비즈니스 쪽만이 아니고 생애최초로……

○**소위원장 김교흥** 주거용.

○**정우택 위원** 주거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기 때
문에 포함을 시킨 건데.

○**소위원장 김교흥** 그런데 오피스텔을 하게 되
면 나중에 정상적인 집을 구매할 때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조은희 위원** 손해 봐요.

○**소위원장 김교흥**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혼란 때문에 빠자는 건데.

○**조은희 위원** 오피스텔을 생애최초로 해 버리면,
오피스텔은 5억밖에 안 되는데 손해 보니까……

○**소위원장 김교흥** 그러니까 손해 본다고, 그래
서 우리 정우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
렇게……

○정우택 위원 그래서 제가 항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오피스텔은 빼는 걸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133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주택공시가격 적용특례입니다.

서영교 의원안은 과세표준 산정 시 21년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되 실제 납부세액은 전년도 수준 이하로 동결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해식 의원님 안은 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되 21년 또는 22년 주택공시가격이 20년도 공시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시가격 중 낮은 것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택 보유로 인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하와 1세대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22년도에 주택 재산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를 인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담을 완화를 했고요. 22년도, 작년도 재산세는 이미 납부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별도의 개정 실익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우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식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짜 하나 남았습니다.

137쪽.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대한적십자사의 의료사업 외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감면세목 및 감면을 확대가 정부안과 이체익 의원안이 좀 다른데요. 이체익 의원안은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100% 면제로 확대

하려는 것으로서 대한적십자사가 행하는 구호·사회복지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다만 대한적십자사와 유사하게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 등과의 형평성, 해외국가의 자국 적십자사의 지원 사례 그다음에 적십자사의 세부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대한적십자사가 세부담의 여력이 있다는 것과 또 보훈복지의료공단이라든지 법무보호복지공단 같은 유사 공공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감면을 100%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위원님들 말씀해 주십시오.

○정우택 위원 감면을 상향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 정부가 100%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0% 정도 하면 정부 쪽에서는 받을 수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교흥 차관님, 타 공공기관은 어때요? 어떻게 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25% 정도 감액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타 공공기관은 25%예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50%로 감면을 하되, 예타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수렴도 하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다시 논의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1년 정도 한시적으로……

○정우택 위원 그러니까 50% 감면하고 한 1년 정도 연장해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절차를 따져보는 게 어떨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걸 건의드립니다.

○정우택 위원 정부가 그 정도는 받을 수 있지요?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그래요.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천준호 위원 일몰기한을 1년으로 하자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교흥 1년 하고 검토를 더 해서……

○정우택 위원 지방정부하고도 협의해서 법적인 절차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예, 협의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천준호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대신 50%, 1년 연장, 50%.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지역자원시설세는 뭐예요? 지역자원시설세도 50%?

○행정안전부차관 한창섭 아닙니다. 그건 목적세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소위원장 김교흥 이것 빼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취득세 50%, 재산세 50% 하고요 1년 연장,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기까지 하시지요. 그리고 내일 또 천리를 달려야지.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조응천 위원 방망이 오늘 안 쳐요? 오늘까지만 것 오늘 쳐야지.

○소위원장 김교흥 오늘 그걸 못 한대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해야 된대.

금일 1소위 법안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늘 다 하지 못한 지방세특례제한법부터 지방세법 등 기타 지방세 관계법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법안심의로 수고 많으셨고 차관을 비롯한 행안부 공무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공무원 여러분, 국회보좌직원 여러분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 교 흥	김 용 판	박 성 민	송 재 호
이 해 식	정 우 택	조 은 희	조 응 천
천 준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유 상 조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 관

한

창

섭

지 방 세 정 책 관

진

명

기